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 자원 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 · 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 출고 · 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16. 3. 22.>

1. 삭제<2013. 12. 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 · 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 · 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1.>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 · 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 ·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 ·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2.>

1. 폐전기 ·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의2(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 분리 ·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6. 12.>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3(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 · 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 · 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2019. 6. 12.>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 · 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 · 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4(폐전기 · 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 · 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 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 운반계획서 1부
3.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 · 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 · 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 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 · 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사업자

[제목개정 2012. 1. 3.]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 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 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 ·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 ·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 · 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 · 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제목개정 2012. 1. 3.]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16. 3. 22.><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16. 3. 22.><
[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 ·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 · 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1조(폐전기 ·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1조의2

[제11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3. 12. 31.>]

제11조의3삭제 <2013. 12. 31.>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 2제1항 ·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 · 처리공정도

4. 수집 · 운반 · 재활용 · 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 · 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 · 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 · 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 · 폐업 ·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 폐업의 경우

-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3. 12. 31.]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 · 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 · 수입업자 등이 기록 · 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제조 · 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매입 · 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 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 · 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 · 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 · 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 · 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 · 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 · 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268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 · 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호, 2008. 3. 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2호, 2012. 1. 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12. 11. 1.>(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03호, 2013. 3. 2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34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 2014. 12. 29.>(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3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 ·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31. > [시행일 : 2023. 1. 1.]

제5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 한다.		<p>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 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p> <p>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2.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 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 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신·사무기기	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p>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p> <p>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4. 일반 전기·전자제품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태양광 패널 법제처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 한다.		<p>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p>

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 · 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6. 12.>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 분리 ·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1. 회수 · 분리 기준

-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 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압력 값이 음압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다. 회수 후에는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용기의 밀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을 재활용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관 기준

- 가.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용기는 충전 완료된 용기, 충전 중인 용기, 빈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 및 충전 중인 용기는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명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 물질의 종류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는 보관 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보관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기준

- 가.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 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용기가 전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20.>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6.3.22.>

폐전기 ·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 ·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삭제 <2016.3.22.>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감경 사유	감경금액
가. 삭제 <2016.3.22.>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 · 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 · 운영한 경우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 · 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 · 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법제취소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가 폐전기 · 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 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 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 활용 · 회수체계 구축 관 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비고

- 폐전기 · 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9. 6. 1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12.31>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을 하려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평가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1쪽)

공표자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정보	①제품의 종류	제품명(규격)
	②세부모델명(번호)	최초출시일
	제품의 종량	③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당사는 위 []자동차가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확인·평가한 결과

[]준 수 하였음을 공표합니다.
[]미준수

년 월 일

공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 ① 제품의 종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모델명(번호), 자동차의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평가서 작성



금표



조사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자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m²] _____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여부 확인·평가서

(제2쪽)

공표자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정보	① 차량의 종류	차량명
	② 세부모델명(번호)	최초출시일
	제품의 종량	③ 제조·수입업자
재활용가능률 및 에너지회수가능률 기준	재활용가능률	%
	에너지회수가능률	%

당사는 위 자동차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확인·평가한 결과 ([]준수, []미준수) 하였음을 공표합니다.

년 월 일

공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 ①제품의 종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합니다.
- ②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평가서 작성



공표



조사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자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출고량(수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비고
		출고(수입)대수	출고(수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종량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요령

-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개별 품목별 출고대수와 출고된 제품별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③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6.3.22.>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재활용 원료 사용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합니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작성방법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 합니다)를 사용한 제품명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9. 6. 12.>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판매량(매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판매대수	판매량(kg)	매입대수	매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의3에 따라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신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매입·판매 실적서 작성



접수



확인·조사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개별 품목별 판매/매입대수와 판매/매입된 제품별 총 증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③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인계 및 재활용계획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 및 인계 방법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인 계	재활용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인계·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인계계획서 1부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작성요령

- ①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직접 회수, 궁제조합 가입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궁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을 적습니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 방법을 적습니다).
- ⑤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 ⑥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자에게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kg)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 ⑦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7.20.>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 및 인계계획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방법	④인계방법	위탁비용			
				회수		인계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①회수·인계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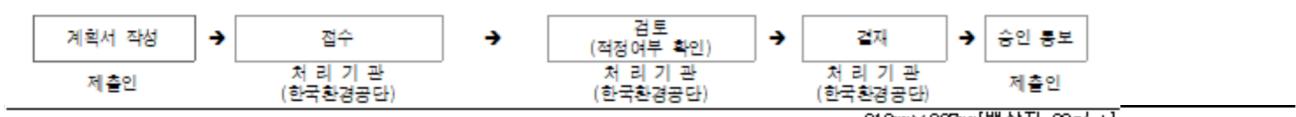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작성오령

- ①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직접 회수, 공제조합 가입, 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④ ③에 직접 회수로 작성한 경우, 수집소까지 인계하는 방법(자사 물류 차량 이용, 제조사 물류 차량 차량 이용 등)을 적습니다.
 *위탁비용란: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회수 또는 인계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⑥ 회수 또는 인계 수탁자에게 회수 또는 인계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kg)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⑦ 회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 · 인계 및 재활용계획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 및 인계방법	④재활용 방법 및 기준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인 계	재활용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 · 인계 · 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활승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8.12.31>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 및 인계계획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방법	④인계방법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⑦회수·인계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 계획을 승인합니다.

三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22.>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 (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 품)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재활용의무량		②재활용량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③제품군	④출고량 (kg)	⑤총 출고량 중 자사 제품군의 출고량 비율(%)	⑥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kg)	⑦재활용 실적 (kg)	⑧회수 및 인계방법	⑨재활용 방법 및 기준	
⑩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재활용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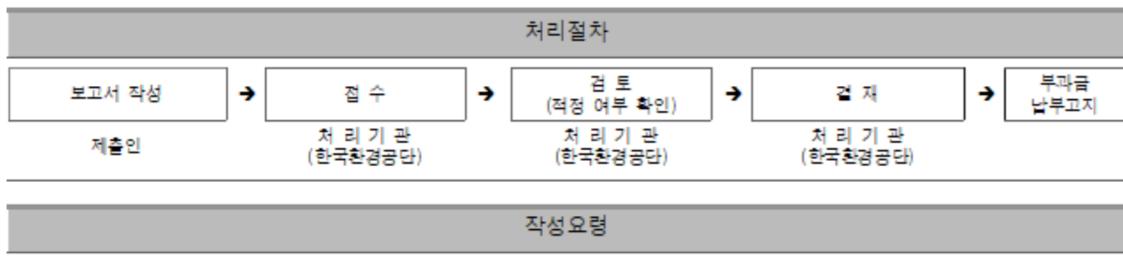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등 수 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 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 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 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 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부록)



- ①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적습니다.
- ② 재활용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사무기기 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④ 제품군(③)별 출고량(품목별로 출고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 ⑤ 전체 재활용의무생 산자의 의무이형 전년도 총 출고량 중 자신이 출고한 전년도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을 적습니다.
-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kg)을 적습니다.
-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재활용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⑧ 직접 회수하여 인계하는 경우는 '자가 회수'로, 공동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⑩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내용을 적되, 기자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6.3.22.>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 품)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의무 이행결과	①회수의무량 산출 기준	②회수량					
		③제품군	④매입량 (kg)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	⑥제품군별 회수의무량 (kg)	⑦회수실적 (kg)	⑧회수방법
⑨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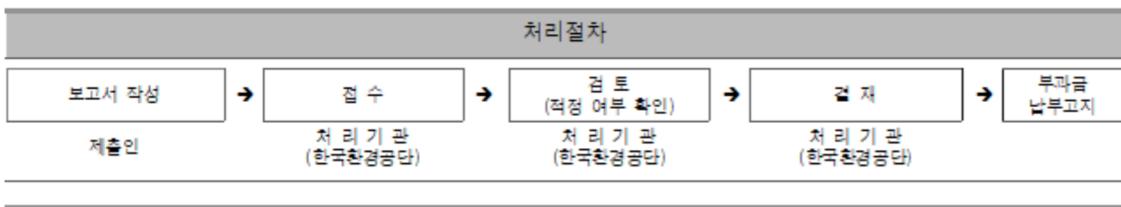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부록)

**작성요령**

- ① 해당 연도의 회수의무량을 적습니다.
- ② 회수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사무기기 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④ 제품군(③)별 매입량(품목별로 매입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 ⑤ 전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매입량 중 자신이 매입한 전년도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을 적습니다.
-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kg)을 적습니다.
-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회수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⑧ 폐제품을 자사가 직접 회수한 경우는 '자가 회수'로, 제조사 물류센터가 회수한 경우는 '대형 회수'로, 금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 ⑨ 금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급된 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6.3.22.>

분할납부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분할납부 신청 사항	총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회별	납부일	납부금액	비고
	제1회	8월 31일		
	제2회	11월 30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후단 또는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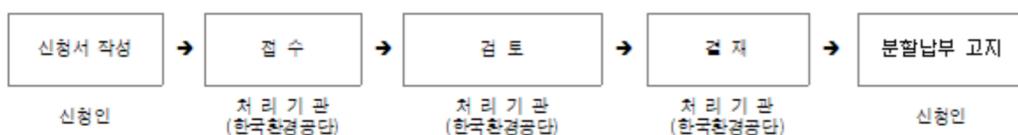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2.31>

(제1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화수부과금 고지서 일본(세입장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2차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원
					원
					원
년 월 일					
세입장수관 :					직인
170mm × 105mm (전산용지)					

(제2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화수부과금 고지서 결 앙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2차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원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온해 우체국					수납인
170mm × 105mm (전산용지)					

(제3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영수증(별통지서(세입장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월
			월
			월
		납기내 금액	월
			월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월
	납기후 금액		월
	2차	년 월 일	월
	납기후 금액		월

세입장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 105mm(전산용지)

(제4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월
			월
			월
		납기내 금액	월
			월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월
	납기후 금액		월
	2차	년 월 일	월
	납기후 금액		월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 105mm(전산용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산설 2019. 6. 12.>

[] 징수유예
부과금 [] 분할납부 신청서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임쪽)
------	-----	---------	------

신청인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연도(분기)	발행 번호	부과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납부기한	금액	

징수 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 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회수	연도(분기)	발행 번호	분합납부 기한	분합납부 금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합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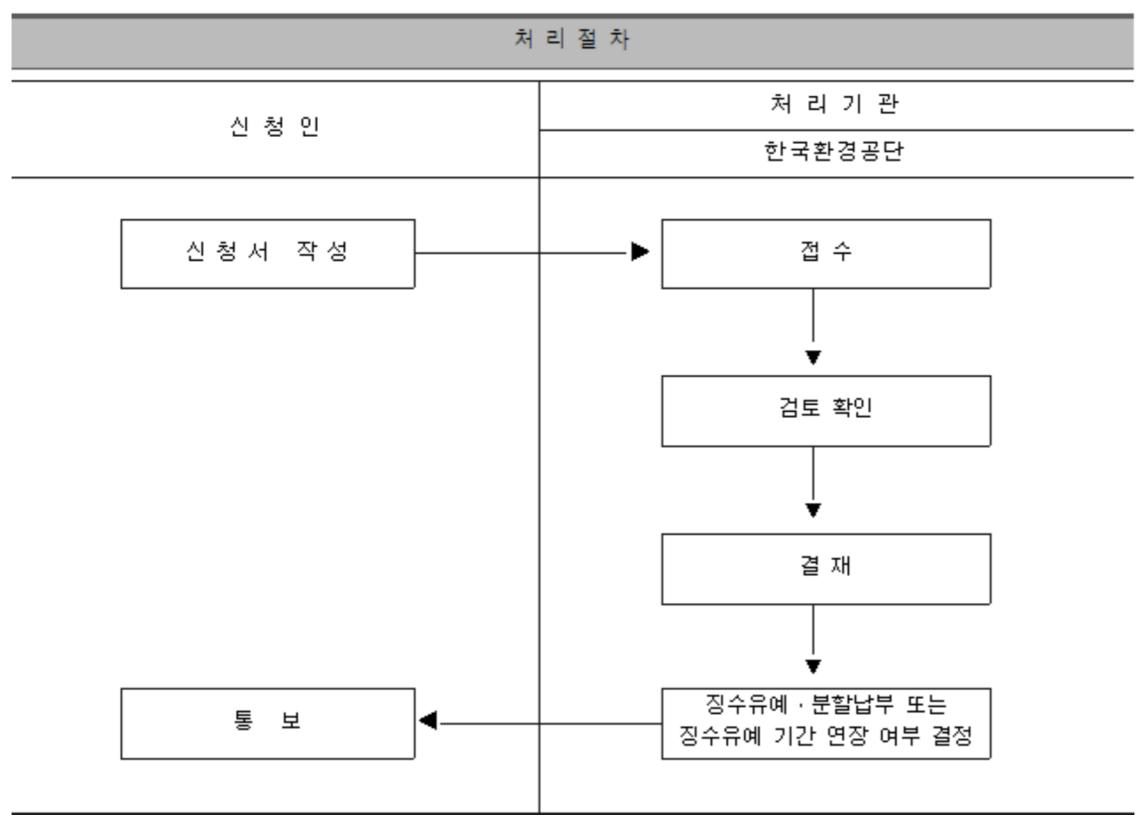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법제처

36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국가법령정보센

(뒤쪽)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 징수유예
 부과금 [] 분할납부 [] 결정 통지서
 [] 거부결정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부과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 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합납부 금액	
거부결정의 이유					
귀하가 20 . . . 에 신청한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합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책임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9. 6. 12.>

부과금 징수유예 ·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부과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 · 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부과금 징수유예 · 분할납부를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5항 · 제6항 및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4서식) <신설 2019. 6. 12.>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우 〇〇〇-〇〇〇 주소 /전화 ()〇〇〇-〇〇〇〇 /전송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부 부장 〇〇〇 담당자 〇〇〇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 부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부담금의 내용					
회계연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좌	금액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변경사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4항제호				
변경납부기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19.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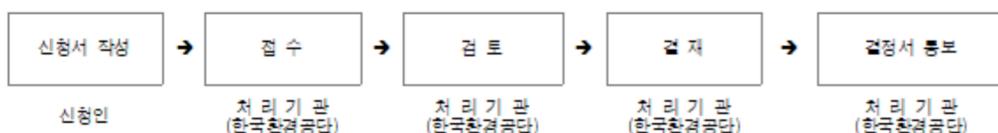
부과금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고지서 발행일자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9. 6. 12.>

결정서

제 호

신청인 :

귀하가 20 . . . 신청한 부과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및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책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2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일반 현황	대상품목	조합원 수	분담금(원/kg)
	재활용의무총량	조합의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의무량 점유율(%)
	회수의무총량	조합의 회수의무량	회수의무량 점유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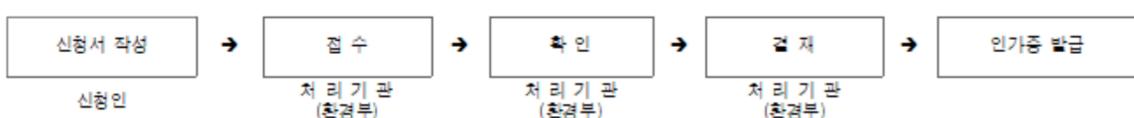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활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 조합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p>「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환경부장관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직인 </div> </div>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조합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12.>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일반현황

회원	제조 / 수입업자 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수	개소
	파쇄재활용업자 수 (용량)	(개소 톤/일)	폐가스튜처리업자수 (용량)	(개소 톤/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수 (용량)	(개소 톤/일)		
재무의 건전성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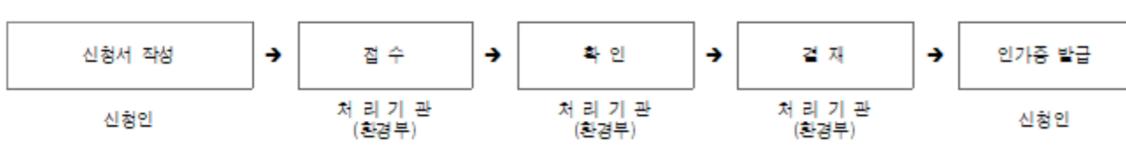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1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튜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1. 단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4. 사업내용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m²)]

[별지 제13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전기·전자제품에 자동차의 자동화 활용에 관할 법령 ■ 시험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12.>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및 재활용결과

(단위 : kg, 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三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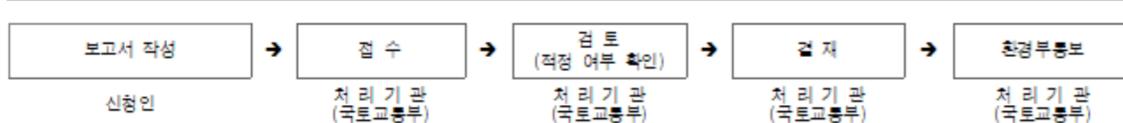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기록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스튜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상세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자서 오류

- ① 재사용량은 폐자동차를 해체 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판매(수출을 포함합니다)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합니다
 - ② 폐륜휠유, 타이어, 배터리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적정업체에 인계한 양,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 파생자 활용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간업체에 공급한 양 등 파생자 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제외한 양을 기재합니다.
 -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 ④ 파생자 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3.22>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및 인계결과

(단위 :kg)

인수 중량	재활용결과		파쇄잔재를 인계			최종잔재를 처리	
	①재활용량	②재활용방법 및 기준	업체명	중량	방법	중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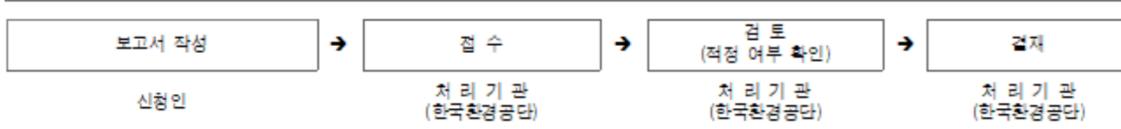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① 폐자동차를 파쇄하여 자질별로 선별한 물질을 수요자에게 공급한 양 또는 자체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합니다.

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3.2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파쇄잔재물 재활용결과

(단위 :kg)

인수 증량	재활용결과		최종잔재물 처리		비고
	①재활용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	방법	증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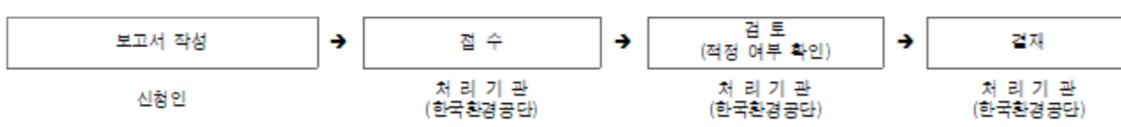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1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처리결과

(단위 : kg)

인수 증량	제 품 처 리		비 고
	①재활용방법 및 기준	증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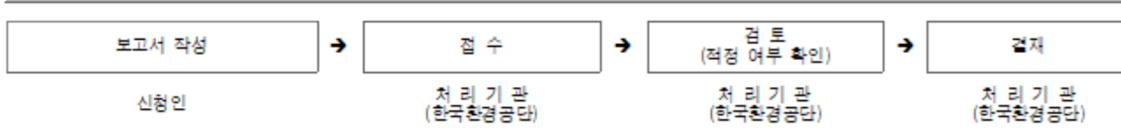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12.>

[] 폐자동차재활용업 [] 등록 신청서
 [] 폐가스류처리업 [] 변경등록 신고서

신청인 (신고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신고)업종	<input type="checkbox"/> 파쇄재활용업 <input type="checkbox"/> 파쇄잔재물재활용업 <input type="checkbox"/> 폐가스류처리업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재활용 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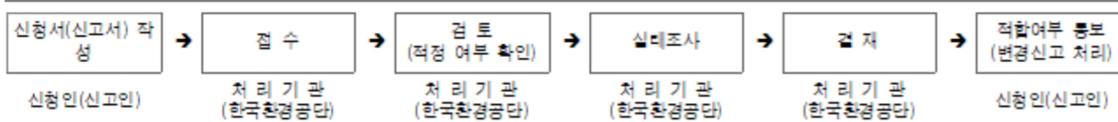
첨부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등록증명서 6. 자활용시설 등록증명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등록·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6. 12.>

(일쪽)

폐자동차재활용업 폐차재활용업
 폐차재물재활용업 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 장비				
영업대상폐기물				
재활용 방법				
처리공정				
등록조건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재활용업 · 폐차재물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150g/m²)]

(부록)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인

<행정처분 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위반내용	연월일	처분내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활승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31>

폐자동차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폐자동차재활용업
 휴업
 폐가스류처리업
 폐업 신고서
 재개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허가(신고)번호	
	⑤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 업종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 휴업 ⑦ [] 폐업 연월일 [] 재개업		⑧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휴업 ⑨ [] 폐업 사유 [] 재개업			

보관폐기물의 처리 결과

(단위 : 톤)

⑩ 폐기물종류	⑪ 보관량	⑫ 처리결과		
		처리일자	처리량	처리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휴업
 폐가스류처리업 폐업 를 신고합니다.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9. 6. 12.>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리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 자동록 번호	
	③ 성명(대 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 업종 []파쇄재활용업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보관폐기물의 처리 계획

(단위 : 톤)

⑥ 폐기물종류	⑦ 보관량	⑧ 처리계획			
		처리예정일	처리예정량	처리방법	
		자가/위탁	처리업체(위탁의 경우만 작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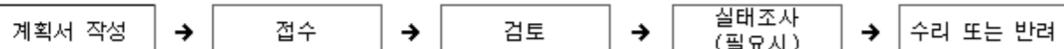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작성방법

- ① ~ ⑥란은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인의 인적사항 및 업체정보를 적습니다.
- ⑦란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파쇄잔재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⑧란은 폐기물의 현재 보관량을 적습니다.
- ⑨란은 보관폐기물의 처리예정일, 처리예정량을 적고, 처리방법에는 "자가" 또는 "위탁"방법으로 적습니다. 단, "위탁"처리일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명 및 사업자번호를 같이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제출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법제처

59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국가법령정보센

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12.31>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 파쇄재활용업자
 [] 폐가스류처리업자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④전화번호	
	②주 소(사무실)	⑤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⑥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용	⑦상 호(명칭)	⑩전화번호	
	⑧주 소(사무실)	⑪법인등록번호	
	⑨대표자 성명	⑫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대 상	구 분	[] 파쇄재활용업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⑬업 종	
⑭등 록 일			
⑮등록번호			
승계사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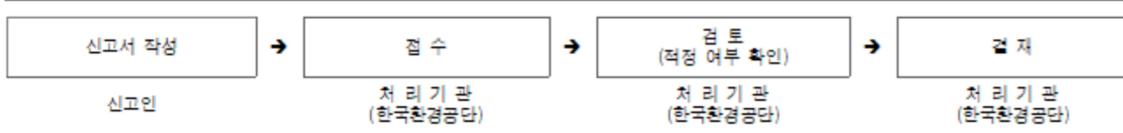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일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오령

- ①부터 ⑯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부터 ⑯까지는 지위승계 이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31>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제품군:

(단위: 대, kg)

작성요령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기록해야 하며, 제조하는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활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서식] <개정 2018.12.3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관리대장

제품군:

(단위: 대, kg)

작성요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관리대상 제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판매할 때마다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1>

회수·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관리표 작성 시 EcoAS(www.eco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군:

(단위: 대, kg)

품목명	세부품목명	연월일	①회수내용		②인계내용		③처리내용				④보관량(kg)
			업체명	회수량(kg)	업체명	인계량(kg)	⑧재활용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kg)	업체명	처리방법	

작성요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① 회수·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한 업체명과 회수량을 적습니다.
- ② 회수한 제품을 인계한 업체명과 인계량을 적습니다.
- ③ 재활용 등 처리 내용을 적습니다(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⑤ 선별 후 발생한 쓰레기나 미처리 제품 등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소각, 매립, 재활용 등), 처리량 등을 적되, 재활용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⑥ ①의 회수량에서 ②의 인계량 또는 ③의 처리량을 제외한 양을 적습니다(판매업자의 경우 ①에서 ②를 제외, 재활용의 무생산자의 경우 ①에서 ③를 제외한 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종)]

[별지 제24호서식]

재질 구조개선평가대장				
대상제품				
평가자				
평가일 및 장소				
평가내용				
내용 평가사항	개선대상	평가내용	평가결과	향후개선 사항
구조개선사항				
재질개선사항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평가대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설계단계에서 시행기록합니다.
- 대상제품에 명칭과 고유모델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평가자는 설계담당부서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 개선대상은 개선되어질 부품종류별 또는 재질종류별로 기재합니다.
- 평가내용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평가결과는 평가 후 제품생산 시 적용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향후 개선사항에는 기술부족 또는 설비미비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4.12.29.>

(제1쪽)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당월 인수: 대	당월 해체: 대			전월 이월: 대			총 재고: 대				
구 분	당월 해체결과			전월 이월	① 당월 재활용 (판매·인계)	② 당월 재사용 (판매·인계)	③ 당월 폐기 처리		④ 재고		
	회수량	미회수량	회수비율	수량	수량	중량 (kg)	수량	중량 (kg)	수량	중량 (kg)	수량
연료	kg	kg	%	-	-	-	-	-	-	-	-
에어컨냉매	kg	kg	%	-	-	-	-	-	-	-	-
액상폐기물	kg	kg	%	-	-	-	-	-	-	-	-
부동액	kg	kg	%	-	-	-	-	-	-	-	-
연료통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액화가스탱크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에어백	개	-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배터리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
타이어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출매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범퍼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⑥기타 재사용부품 등	-	-	-	-	개	kg	개	kg	개	kg	-
상고철 (제강사 납품용)	-	-	-	-	-	kg	-	kg	-	kg	-

※ 작성요령

-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게 "재활용 용도"로 판매하거나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 "재사용 용도"로 판매하거나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③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 처리"를 위하여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④ 당월 해체결과 회수량과 전월 이월 수량을 합산한 수량에서 당월 재활용량, 당월 재사용량 및 당월 폐기 처리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 ⑤ 기타 재사용부품 등: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스트립 등), 시트폼

(제2쪽)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해체일 :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차량번호		제조자		차종/모델/연식	/ /
구분	해체수량(또는 회수중량)	① 해체여부		② 미해체시 사유	
연료	kg				
에어컨냉매	kg				
액상폐기물	kg				
부동액	kg				
연료통	개				
액화가스탱크	개				
에어백	개				
배터리	개				
타이어	개				
촉매	개				
범퍼	개				

※ 작성요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제 2항에 따른 자동차를 해체(폐차) 작업한 결과를 매일 기재합니다.

① 해체여부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합니다.
A: 전량 해체, B: 일부 해체, C: 전량 미해체

② 일부 해체 또는 전량 미해체일 경우 사유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하며, 미해체시 사유가 "D"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합니다.
A: 해당 부품의 부재, B: 부품의 심각한 파손, C: 체결 부위 손상, D: 기타 사유

(제3쪽)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일 :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번	인수자	부품명	수량	중량(kg)	목적 구분	비고		

※ 작성요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분리품을 재활용한 내용을 매일 기재 합니다.

① 인수자에는 부품 및 물질을 인수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단, 재사용 부품 및 물질을 개인이 인수한 경우 개인으로 기재).

② 목적 구분에는 재활용(내수 판매), 재활용(수출 판매), 재사용(내수 판매), 재사용(수출 판매), 폐기 처리로 기재합니다(수출의 경우는 비고란에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판매재활용관리표 입력대상 부품 및 물질: 연료통, 액화가스탱크, 에어백, 배터리, 타이어, 측면, 범퍼, 기타 재사용부품 등, 상고철(제강사 납품용)

※ 배터리: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物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업자의 경우 재사용 실적에 한해 입력

※ 기타 재사용부품 등: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스트립 등), 시트폼

※ 반품의 경우 반품 업체명(또는 개인)과 함께 수량 및 중량에 마이너스(-) 값을 기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6. 12.>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연 월 일	① 인수내용		처 리 내 용			④ 파쇄잔재물		⑤ 공급내용		
	업체 명	인수 량	② 파 쇄		③ 금속류회수		분리선별	최 종 파 쇄 잔 재 물 량	업체 명	품 목
			투입 량	방법 및 기준	중량	방법 및 기준	분리 선별 량	방법 및 기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요령

- ① 인수내용란에는 압축폐차를 인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명 및 인수량을 적습니다.
- ② 파쇄란에는 폐자동차를 파쇄기에 투입한 중량 및 파쇄의 방법 및 기준을 적습니다.
- ③ 금속류회수란에는 재활용실적을 짐계할 수 있도록 파쇄물 중 금속류 등을 회수한 양과 방법 및 기준을 적습니다. 이 경우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④ 파쇄잔재물란에는 파쇄물 중 금속회수 후 남은 파쇄잔재물의 분리선별량과 방법 및 기준을 적고, 최종파쇄잔재물량란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하지 않은 토사 등의 잔재물의 양을 적습니다. 이 경우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⑤ 공급내용란에는 금속류, 파쇄잔재물의 분리선별품 및 최종 파쇄잔재물을 공급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연 월 일	① 인수내용		처 리 내 용					⑤ 소각 회분 발생 량	⑥ 공급내용		
	업체 명	인수 량	② 투입	③ 재활용	④ 금속회수	그 밖의 재활용 제품	최종 잔재 물		품 목	수 량	방 법
			중량	방법 및 기준	중량	품 목	중량	중량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① 인수내용은 파쇄잔재물을 인계한 파쇄재활용업자명 및 인수량을 기재합니다.
- ② 투입량은 재활용, 금속회수, 그 밖에 재활용제품 및 최종잔재물 중량의 합을 기재하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별로 기재합니다.
- ③ 파쇄잔재물 중 열회수 또는 물질재활용양 및 재활용방법을 기재합니다.
- ④ 파쇄잔재물 중 금속회수한 양을 기재합니다.
- ⑤ 파쇄잔재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소각회분의 양을 기재합니다.
- ⑥ 소각회분의 공급내용 및 금속회수 후 판매량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6. 1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 대장						(단위 : kg)
연 월 일	①인수내용		②처리 또는 재활용내용		③보관량	
	업체명	인 수 량	처리 또는 재활용 방법	처 리 내 용		
		용기수 중량		용기수 중량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 품))

※ 작성요령

- ① 폐가스류를 인계한 자동차폐차업자명, 인수량을 기재합니다.
 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및 양을 기재합니다.
 ③ ①의 인수량에서 ②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기재합니다.